

제 14 장 통 신

제 14.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을 포함하여 통신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 가. 공중 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조치
- 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조치
- 다.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관한 그 밖의 조치, 그리고
- 라. 부가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조치

2. 방송국 또는 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이 공중 통신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이 장 (제14.20조를 제외한다)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케이블로 배급하는 것에 관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구축·취득·임대·운영 또는 공급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거나, 또는 기업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또는
- 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이나 케이블 배급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에게 자사의 방송 또는 케이블 설비를 공중 통신 망으로서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제 1 절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제 14.2 조

접근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건너 제공되는 모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조건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 가. 공중 통신 망에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고 부착하는 것
- 나. 전용회선을 통하여 개별 또는 복수의 최종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¹⁾
- 다. 소유 또는 전용 회선을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나 다른 기업의 소유 또는 전용 회선과 접속하는 것
- 라. 교환·신호·처리 및 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 마. 모든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한 운용규약을 사용하는 것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사내통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건너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어느 한 쪽 당사국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되거나 달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공중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메시지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나호는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자가 특정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보장한다.

가.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또는

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6.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건이 제5항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러한 조건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인터페이스규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하여 특정의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나. 필요한 경우, 그러한 망 및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건, 그리고

다. 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과 그 장비를 그러한 망에 부착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

제 2 절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

제 14.3 조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 관한 의무²⁾

상호접속

1. 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적 또는 동일한 영역 내에서 간접적으로 상호접속을 합리적인 효율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나. 가호를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가 상호접속협정의 결과로 얻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 및 최종이용자의, 또는 이들에 관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정보를 공중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보장한다.

2) 제14.3조는 부속서 14-가를 조건으로 한다.

번호이동성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합리적 조건으로, 번호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³⁾

동등 다이얼 및 전화번호에 대한 접근

3.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 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동일한 범주의 서비스 내에서 동등 다이얼을 제공할 것, 그리고
- 나. 그 당사국 영역의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전화번호에 대한 비차별적인 접근이 부여될 것

제 3 절

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추가 의무⁴⁾

제 14.4 조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대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다음에 관하여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자회사·계열회사 또는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 가. 동종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이용가능성·공급·요율 또는 품질, 그리고
- 나. 상호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이용가능성

3) 제2항은 인터넷전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3절은 부속서 14-나를 조건으로 한다.

제 14.5 조 경쟁보장장치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다.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제 14.6 조 재 판 매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재판매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 14.7 조 망 요소 세분화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을 세분화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제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통신규제 기관에게 부여한다.

제 14.8 조 상호접속

일반조건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 가. 그 지배적 사업자의 망 내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 나. 비차별적인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효율에 따라
 - 다.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그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 라. 시의 적절하게,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효율로, 그리고
 - 마.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대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의 설비 및 장비를 위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선택권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그의 설비 및 장비를 지배적 사업자의 그것과 상호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가. 새로운 상호접속협정의 협상, 그리고
 - 나. 다음 선택권 중 하나
 - 1) 지배적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제의하는 효율 및 조건을 포함하는 표준상호접속제안, 또는
 - 2) 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의 조건

상호접속 제안 및 협정의 공개

3. 당사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표준상호접속제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제안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적용가능한 절차를 공개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당사자인 모든 상호접속협정을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⁵⁾

6.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 자국 영역의 다른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간에 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을 공개한다.

제 14.9 조

전용회선 서비스의 공급 및 가격채정⁶⁾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과 요율로 공중 통신 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2. 제1항을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공중 통신 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용량 기반의 원가지향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통신 규제 기관에 부여한다.

제 14.10 조

설비 병설

1. 제2항 및 제3항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상호 접속 또는 세분화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에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설비 병설을

5) 미합중국은 주정부의 규제기관에 제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제5항을 준수할 수 있다.

6) 제14.9조는 당사국이 지배적 사업자에게 세분화된 망 요소로서 전용회선 제공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2. 물리적 설비 병설이 기술적 이유 또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실행 가능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 요율로 대안적 해결책⁷⁾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어느 구역이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당사국은 자국 법 또는 규정에 그와 같은 제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14.11 조

전주·관로·도관 및 선로설치권에 대한 접근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그 지배적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전주·관로·도관 및 선로설치권에 대한 접근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 및 요율로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제 4 절

그 밖의 조치

제 14.12 조

해저 케이블 시스템

1. 당사국 영역의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저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육양 설비를 포함하여 그 해저케이블

7) 미합중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가상 설비 병설 제공을 보장하는 대안적 해결책을 제공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제14.10조제2항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시스템에 대한 접근⁸⁾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 영역에서 국제 공중 통신 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가 경제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이 없는 케이블 육양 설비 및 서비스를 통제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⁹⁾

가. 그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다음을 허용하는 것

- 1) 그 공급자의 장비를 어떠한 통신 공급자의 백홀링크 및 해저 케이블 용량에 연결하기 위하여 지배적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육양국의 전송링크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 2)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조건 및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해저케이블 육양국에서 모든 통신 공급자의 해저케이블 용량 및 백홀 링크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송 및 라우팅 장비를 설비 병설하는 것, 그리고

나. 그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통신 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조건 및 요율로 해저케이블 육양국의 국제전용 회선, 백홀링크 및 전송링크를 제공하는 것¹⁰⁾

제 14.13 조

부가서비스의 공급조건

1.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이 부가서비스의 공급자로 분류한 자국 영역의 기업으로서 그 기업이 소유하지 아니한 설비를 통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없다.

가. 그러한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공급할 것

나. 그러한 서비스 요율을 비용상 정당화할 것

8) 케이블 육양 설비가 소재한 당사국 영역의 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한 다른 쪽 당사국 공급자에 대하여, 그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공중 통신 서비스의 허가된 공급자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가 입차하는 시설을 통한 해저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제1항을 준수할 수 있다.

9) 제2항은 부속서 14-나를 조건으로 한다.

10)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육양국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그 육양국에서의 용량이 가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 다. 그러한 서비스의 효율표를 제출할 것
- 라.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자사 망을 특정 고객과 연결할 것,
또는
- 마. 공중 통신 망 이외의 다른 망에 연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의 특정
표준 또는 기술 규정을 준수할 것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특정 경우에 있어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단한 부가 서비스 공급자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또는 달리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기술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4.14 조 독립적인 규제기관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모든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통신규제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지분을 소유하거나¹¹⁾ 운영 또는 경영 역할을 유지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국은 허가,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접속, 효율, 그리고 비정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할당 또는 배분에 관한 결정 및 절차를 포함한 자국의 규제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도록 보장한다.

제 14.15 조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자국이 정의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것 보다 더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1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4.14조는 통신규제기관 이외의 당사국 정부기관이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4.16 조

허가 절차

1. 당사국이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때, 당사국은 다음을 공개한다.

가. 자국이 적용하는 모든 허가 기준 및 절차

나.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그 당사국이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기간, 그리고

다. 발효중인 모든 허가의 조건

2.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 거부 사유를 신청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14.17 조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주파수·번호·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2. 각 당사국은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하거나 할당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제공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유한다.

3.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며 주파수를 관리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제12.4조(시장접근)가 국경간 서비스 무역에 적용되든지 또는 제12.1조(적용범위)제3항의 운영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자에 적용되든지 간에, 그 자체로 제12.4조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아니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당사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 및 미래의 수요와 전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4. 각 당사국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전파의 사용과 통신 서비스 공급자간 경쟁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비정부 통신 서비스용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도록 노력하고, 당사국이 행정적 유인 가격책정, 경매 또는 비면허 사용에 의한 것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에 의하여 이러한 행위를 장려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제 14.18 조 집 행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제14.2조 내지 제14.12조에 규정된 의무에 관한 당사국의 조치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 권한은 금전적 벌칙, 구제명령(잠정적 또는 최종적), 시정 명령이나 허가의 수정·정지 또는 취소를 포함하는 효과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제 14.19 조 통신 분쟁의 해결¹²⁾

제21.3조(행정절차) 및 제21.4조(재심 및 불복청구)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이의신청

- 가. 1) 기업은 제14.2조 내지 제14.12조에 규정된 사안에 관한 당사국의 조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 또는 다른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 2) 당사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는, 그 공급자가 상호접속을 요청한 후 공개적으로 지정된 합리적 기간 내에, 그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조건과 요율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¹³⁾에 의한 심사를 구할 수 있다.

12) 대한민국의 경우, 제14.19조의 목적상, **기업**은 자연인 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조직된 법인을 말한다.

13) 미합중국은 주 정부 규제당국에 의한 심사를 규정함으로써 가호2목을 준수할 수 있다.

재검토

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은 그 기관이 그 판정 또는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 어떠한 당사국도, 적절한 당국이 그 판정 또는 결정을 보류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청원이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¹⁴⁾ 그리고

사법적 재심

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은 그 당사국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당국에 의한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재심을 얻을 수 있다. 어떠한 당사국도, 관련 사법기관이 그 판정 또는 결정을 보류하지 아니하는 한, 사법적 재심의 신청이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제 14.20 조

투 명 성

제21.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 가. 그 근거를 포함하여 자국 통신규제기관의 규범제정과 자국 통신규제기관에 제출된 요금표가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달리 공개되도록 할 것
- 나. 이해관계인이 자국 통신규제기관이 제안하는 규범제정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공고와 합리적인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받을 것
- 다.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규범제정에 있어 통신규제기관에 제출된 모든 의견이 공개될 것
- 라. 통신규제기관에 제출된 의견에서 제기된 모든 중대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자국 통신규제기관이 규범제정 과정에서 응답할 것, 그리고

14) 대한민국의 경우, 나호는 서비스 공급자간,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간 분쟁에 대한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다음을 포함하여 공중 통신 서비스에 관한 자국의 조치가 공개될 것

1) 다음에 관한 조치

가) 서비스의 요율 및 그 밖의 조건

나)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다)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공중 통신 망에 부착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라) 통보, 허가, 등록 또는 면허 요건이 있으면, 그러한 요건, 그리고

2) 사법적 및 그 밖의 심판절차에 관한 절차

제 14.21 조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¹⁵⁾

1. 양 당사국은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과 공중 통신 및 부가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을 부여하는 규제 방식이 정보 및 통신 기술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공중 통신 서비스 또는 부가 서비스의 공급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술 또는 표준을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되어야 하며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입안·채택 또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항에 언급된 기술적 요건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정의할 권리를 보유하며, 통신 또는 부가 서비스나 장비의 국내 공급자에게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공공정책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공중 통신 또는 부가 서비스의 공급자가 특별한 전파 주파수 대역에서 자신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술 또는 표준을 제한하는 기술적 요건¹⁶⁾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은 주파수의 효과적

15) 제1항 및 제5항나호를 제외하고, 제14.21조는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채택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6) 양 당사국은 공중 통신 또는 부가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기술 요건을 국제표준에 기초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또는 효율적 이용(유해한 방해의 방지에 대한 것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거나 국내 또는 국제 망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접근을 보호하거나¹⁷⁾, 법 집행을 원활히 하거나,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을 보호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4.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통신 또는 부가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기술적 요건이 디자인 또는 묘사적 특성보다는 성능에 기초하도록 노력한다.

5. 당사국이 통신 또는 부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특정한 기술이나 표준을 이용할 것을 강제하거나, 자신이 이용하는 기술을 선택하는 공급자의 능력을 달리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는 경우, 당사국은

가. 다음과 같은 규범제정에 기초하여 그러하게 한다.

1) 규범제정시 그 당사국이 시장의 힘으로는 자국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달성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다고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2) 규범제정시 통신 또는 부가 서비스나 장비의 공급자에게 대체 기술 또는 표준이 당사국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조치를 채택한 후에, 당사국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체 기술 또는 표준의 이용을 추가로 허용하는 규범제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당사국에게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통신 또는 부가 서비스나 장비의 공급자에게 제공한다. 당사국은 그 조치를 개정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그 요청을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이유를 적시하여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고, 그 답변과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그 요청을 공개한다.

제 14.22 조

규제적용 면제

1. 양 당사국은 통신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폭넓은 선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쟁적인 시장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다음을 판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이 공중 통신

1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국제 망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접근 보호”는 이동 망에 대하여 전세계적으로 접근하는 소비자의 능력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서비스로 분류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을 자국의 법에서 규정하는 한도에서 면제할 수 있다.

가. 그 규제의 집행이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관행을 예방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하고,

나. 규제의 집행이 소비자의 보호에 필요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다. 규제적용 면제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제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공이익에 합치한다는 것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규제기관의 규제적용 면제 결정이 제14.19조다호에 따른 사법적 재심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

제 14.23 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이 장이 우선한다.

제 14.24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백홀링크라 함은 해저케이블 육양국으로부터 모든 공중 통신 망에 대한 별개의 일차적인 접근지점까지의 종단 간 전송연결을 말한다.

상용 이동 서비스라 함은 이동무선수단을 통해 제공되는 공중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원가지향이라 함은 원가에 기초함을 말하며,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설비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비용산출방법을 수반할 수 있다.

전송링크라 함은 해저케이블 육양국에 설비 병설된 공중 통신 서비스의 모든 공급자의 전송·교환 또는 라우팅 장비에 해저케이블 용량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육양국의 링크를 말한다.

동등 다이얼이라 함은, 최종이용자가 어느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공중 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동등한 자리수를 사용할 수 있는 최종이용자의 능력을 말한다.

최종이용자라 함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 이외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공중 통신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또는 가입자를 말한다.

기업이라 함은 제1.4조(정의)에 정의된 기업을 말하며, 기업의 지점을 포함한다.

필수 설비라 함은 다음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고,
-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상호접속이라 함은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회선이라 함은 이용자의 전용 사용 또는 이용가능성을 위하여 따로 둔 둘 이상의 지정된 지점간의 통신 설비를 말한다.

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다음의 결과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를 말한다.

-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망 요소라 함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에 이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하며, 그러한 설비 또는 장비에 의하여 제공되는 특징·기능 및 성능을 포함한다.

비차별적이라 함은 동종의 상황에서 동종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그 밖의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번호이동성이라 함은 동일한 범주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간에 전환할 때에 서비스의 품질·신뢰성 또는 편의성의 손상 없이,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번호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 통신 서비스의 최종이용자의 능력을 말한다.

공중 통신 망이라 함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통신 기반을 말한다.

공중 통신 서비스라 함은 당사국이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요구하는 모든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한 서비스는 특히 고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 면에서 종단간의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지점 간의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를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전화 및 데이터 전송을 포함할 수 있고, 부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물리적 설비 병설이라 함은 공급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통제하고 사용하는 구역에서 장비를 설치·유지 또는 수리하기 위한 공간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말한다.

표준상호접속제안이라 함은 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제시되고 통신규제기구에 제출되거나 통신규제기구¹⁸⁾에 의하여 승인된 상호접속제안으로서, 상호접속을 위한 약관, 요율 및 조건이 충분히 상세하게 규정되어 이를 수락하려는 용의가 있는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는 이에 기초하여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 당사국 영역의 적용대상투자이거나 다른 쪽 당사국의 인으로서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영역 내로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시도하거나 공급하는 인을

18) 미합중국의 경우, 이 기구는 주 정부 규제당국일 수 있다.

말하며,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

통신이라 함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통신규제기관이라 함은 통신의 규제를 책임지는 중앙정부의 기구를 말한다.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 소비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부가 서비스라 함은 제고된 기능을 통하여 통신 서비스에 가치를 추가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가. 미합중국의 경우, 미합중국 법전 제47권제153조제20항에 정의된 서비스를 말하며,

나. 대한민국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에 정의된 서비스를 말한다.

부속서 14-가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대한민국

1. 제14.3조제3항은 국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미합중국

2. 미합중국의 주 규제당국은 개정된 1934년 통신법 제251(f)(2)조에 정의된 시골의 현지 통신교환사업자를 제14.3조제2항 및 제3항에 포함된 요건으로부터 면제할 수 있다.

3. 제14.3조제3항가호는 상용 이동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 미합중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14-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부가적 의무

대한민국

1. 제14.7조, 제14.8조제1항가호·마호 및 제2항가호, 제14.10조, 그리고 제14.11조는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14.8조제1항나호 내지 라호와 제14.9조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제시하는 것보다 불리한 요율 및 조건을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 제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가 그러한 요율 및 조건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제14.19조에 규정된 대로 통신규제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 대하여, 제14.8조제2항나호는 (1) 지배적 사업자와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간에 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 또는 (2)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표준상호접속제안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적용된다.

4. 제14.12조제2항은 대한민국이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라 기간통신 사업자로 허가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적용된다.

5.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에 합치하게, “별정통신 사업자”는 유선이나 무선 또는 다른 전송 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를 소유할 수 있으며, 허가된 기간통신 사업자의 전송 설비를 통하여 자신의 공중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 허가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이다.

6. 제14.4조, 제14.6조, 제14.7조, 그리고 제14.9조 내지 제14.11조는 상용 이동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미합중국

7. 제14.4조 내지 제14.11조는, 그 조에서 기술된 요건이 개정된 1934년 통신법 제3(37)조에 정의된 시골의 전화회사에 적용된다고 주 규제당국이 명령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회사에 대하여 미합중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에 추가하여, 주 규제당국은 개정된 1934년 통신법 제251(f)(2)조에 정의된 시골의 현지 통신교환사업자를 제14.4조 내지 제14.11조에 포함된 요건으로부터 면제할 수 있다.

8. 제14.4조와 제14.6조 내지 제14.11조는 상용 이동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 미합중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